#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513

발의연월일: 2020. 11. 19.

발 의 자:주철현・민형배・조오섭

서삼석 · 민병덕 · 신정훈

위성곤 · 정찬민 · 이상직

윤준병·강득구·윤영덕

의원(12인)

# 제안이유

우리나라 대표 전통식품인 김치는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왔을 뿐 아니라, 코로나19 감염병 사태 발발 이후 유산균 등이 많은 면역력 강화식품으로 인식되며 수출이 증가하는 등 세계인 의 건강 애호 식품으로 도약할 계기를 맞고 있음.

김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식품으로 국내 김치시장 규모는 총 72만t 규모, 1조 2,380억 원에 이르나, 이중 중국산 저가 수입 김치가 29만t으로 40%를 차지하고, 지난 10년간 김치 무역수지는 2억 6,000만\$의 적자를 기록하다가 올해에 들어서야 11년 만에 겨우 흑자로 전환될 정도로 김치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은 추락하였음.

대표 전통식품인 김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화를 촉진하는 한편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2011년 김치산업진흥법이 제정되 었으나, 체계적이고 책임감 있는 전문 집행부서 부재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임.

이에 흩어진 김치산업 역량을 집중 강화시켜, 김치재료의 파종단계에서부터 생산·유통·수출·홍보까지 책임지고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는 전담기구인 김치산업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김치산업진흥법에 규정된 김치산업 진흥을 책임지고 기획할 총괄집행 전담기구인 김치산업진흥원을 설립하여 김치산업 진흥 기반 조성을 위한 조사·연구, 실태조사, 정보체계 구축, 진흥계획 및 사업 수립·집행, 김치산업의 국내외 확산을 위한 활성화연구, 대외협력, 홍보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정부는 진흥원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진흥원의 사업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하면 사업에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지시·명령 등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명확히 함(안 제25조 신설).

#### 법률 제 호

#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를 각각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로 하고, 제3장에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김치산업진흥원의 설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김치산업의 진흥·발전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김치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③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김치산업 진흥 기반 조성을 위한 조사·연구, 실태조사, 정보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업
- 2. 김치산업의 국내외 확산을 위한 활성화 연구, 대외협력, 홍보사업
- 3. 김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등에 관한 사항
- 4. 김치산업 진흥을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필요한 사업의 기획. 집행 등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항과 김치산업 진흥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 ④ 정부는 진흥원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진흥원의 사업을 지도·감독하며, 필요시 진흥원으로 하여금 보고를 하게 하거나 진흥원에 지시·명령 등을 할 수 있다.
- ⑥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김치산업진흥원의 설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김치산업의 진흥・발전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김치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
	<u>다.</u>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
	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
	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
	업을 한다.
	1. 김치산업 진흥 기반 조성을
	위한 조사·연구, 실태조사,
	정보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
	<u>업</u>
	2. 김치산업의 국내외 확산을
	위한 활성화 연구, 대외협력,
	<u>홍보사업</u>
	3. 김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
	한 전문인력의 양성 등에 관
	<u>한 사항</u>
	4. 김치산업 진흥을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필요한 사업 의 기획, 집행 등에 관한 사 항

-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 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항과 김치산업 진흥을 위하여 농림 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 ④ 정부는 진흥원의 설립・운 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 항 각 호에 따른 진흥원의 사 업을 지도·감독하며, 필요시 진흥원으로 하여금 보고를 하 게 하거나 진흥원에 지시 · 명 령 등을 할 수 있다.
- ⑥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 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을 준용한다.

제26조(조세의 감면) (현행 제25 조와 같음)

제27조(자료제출) (현행 제26조와 같음)

제27조(권한의 위임·위탁) (생 제28조(권한의 위임·위탁) (현행

제25조(조세의 감면) (생 략)

제26조(자료제출) (생략)

략)	제27조와 같음)
제2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	제2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
제) (생 략)	제) (현행 제28조와 같음)